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등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43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등(제2조제10호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2. 11.

다. 회 부 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등(제2조제10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부납부기술료로 정의함으로써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와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6. ~ 9. (현행과 같음) 10. <u>“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생략)	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u>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정부납부기술료를-----.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	① ----- ----- ----- ----- ----- -----

현행	개정안
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생략) ② ~ ⑥ (생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제9호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실시”라 정의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정의하고 있음.¹⁾

또한,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²⁾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 8. (생략)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

<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 >



참고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중 정부에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³⁾ 최근 정부납부기술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21~'23)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과기부	12,469	4,648	2,044
국토부	602	501	714
기상청	60	170	72
농림부	885	410	421

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생략)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농진청	523	87	69
문체부	618	418	65
방사청	2,750	3,516	1,494
복지부	3,253	10,373	61
산업부	71,745	68,882	65,228
소방청	-	-	3
식약처	-	-	-
원안위	-	-	-
중기부	23,319	19,577	28,103
해경청	-	36	16
해수부	1,598	1,198	1,138
행안부	-	-	-
환경부	439	3,139	2,272
산림청	18	13	3
교육부	-	-	-
합계	118,279	112,968	101,7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포함하여 기술료를 정의하고 있었으나,⁴⁾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당시 통상적인 국제기준⁵⁾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실시권자가 연구성과소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Royalty)으로만 한정하고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 바 있음.

4)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5) 주요국 중 기업 등에 대한 기술료 정부납부 제도가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며,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를 포함하지 않고 기술실시의 대가(Royalty)를 의미하고 있음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용어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지칭하는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여 타법에서 이를 인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술료의 징수·납부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⁶⁾ 등 20여 개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른 법률과 달리 실시권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와 납부하는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간 혼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상 혼란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를 구분하여 정의할 경우 이를 「과학기술기본법」 등 타 법률에서 인용함으로써 법제 측면에서 경제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둘째, 2025년 8월 기준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이상
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081호) 및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2208084호)이 계류 중이므로 위 2건의 법률안과 병
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별도로 정의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는 이를 직접 인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227